

인천광역시의회규칙(공포)

☐ 제 명 :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

☐ 개정이유

가.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단계에서 과도하게 수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소관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, 회의체 간에 갈등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

나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의 취지를 제한하거나 그 기능이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가.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의 종합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함(제68조제4항)

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(임시회) 제4차 본회의(2013. 9. 12.)에서 의결된
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이 성 말

2013년 9월 16일

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22호

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